

수원지방법원 2021. 3. 25 선고 2020가단531853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순일

변론 종결 2021. 2. 18.

판결 선고 2021. 3.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와 B 사이에 2018. 7. 2. 체결된 86,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B은 2018. 3. 7. 서울 강남구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E에게 16억 7,000만 원에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 그 대금을 지급받은 다음 2018. 4. 11.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B은 1세대 1주택을 이유로 비과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경기광주세무서장은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위 감면신고를 부인하고, 2019. 6. 26. B에게 2019. 9. 6. 납기로 정하여 2018년도 양도소득세 925,569,310원을 고지하였다.

다. B은 2018. 7. 2. 이 사건 매도대금 중 8,600만 원을 딸인 피고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하였다(이하 '이 사건 금원 지급행위'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

B이 이 사건 금원 지급행위로서 피고에게 8,600만 원을 증여하였고 이로 인하여 채무초과상태를 심화시켰으니 위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사해행위인 위 증여행위의 취소와 그 원상회복으로 위 8,600만 원의 반환을 구한다.

2) 피고

이 사건 금원 지급행위는 B 부부가 피고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증여가 아니고, 위 차용금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로서 사해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채무자의 법률행위 등이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는 그 피보전채권과 채무자의 법률행위 등의 존재 사실은 물론, 채무자가 법률행위 등으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다는 사실,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 등 사해행위 성립의 요건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2다59092 판결 등참조),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도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5다62167 판결 등 참조).

한편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 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가 이를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라고 다룰 경우,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하므로 위 금원 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금원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으며(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등 참조), 이때 그 금원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그와 같이 송금한 금원을 수익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서 증여하여 무상으로 공여한다는 데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등 참조). 또한 송금행위의 구체적인 법적 원인을 가리지 않고서 그 송금사실만을 가지고 송금인의 총재산의 실질적 감소를 초래하는 사해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다222725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와 B이 아버지와 딸로서 친족관계인 사실 및 B이 2018. 7. 2. 피고에게 8,6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B의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가 증여라는 점을 입증할 만한 적극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② 피고는 2005. 10.경부터 2016. 4.경까지 사이에 11회에 걸쳐

아버지인 B와 어머니인 F에게 합계 8,700만 원 상당을 계좌이체를 통해 송금해 준 점, ③ 피고가 이 사건 금원 지급행위로 지급받은 돈은 위와 같이 B와 F에게 송금해 준 돈과 거의 비슷한 8,600만 원으로 위와 같이 송금한 돈을 정산하여 반환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큰 반면, 이 사건 금원 지급행위 외에 달리 피고가 B이나 F으로부터 돈을 반환받았다는 자료가 없는 점, ④ 원고는 피고가 소유한 수원시 영통구 G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과정에서 B 또는 F로부터 받은 돈으로 근저당권채무를 변제하였을 것으로 추정하나, 위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한 아무런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10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금원 지급행위를 B의 피고에 대한 증여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금원 지급행위는 B의 피고에 대한 차용금채무 변제를 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금원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연윤희